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의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내 용

경상남도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가.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 미흡

「농지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
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사항
에 대해 추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농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의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등 12개 시·군에서는 불법전용 농지 104건(123,081㎡)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농지불법 전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 미흡

「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¹⁹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 기한내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 이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복구명령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농지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집행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추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농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김해시, 고성군 등 5개 시·군에서는 현장사무실 설치 등 19건(38,575㎡)에 대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경과된 농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에서는 '96년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30/100을 부과하지만, 농지 불법전용자에 대해선 예산 미확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할 때 최후 수단인 대집행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9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민원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허가기간(연장포함)이 다름.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함안
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산청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는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추가고발, 대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장, 밀양시장, 의령군수, 고성군수, 하동군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선 즉시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간을 연장하거
나 원상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